

경운대학교 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취업 기회를 발굴·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 취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기구) 센터에는 취업계와 진로계를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구성) 센터는 센터(소)장과 직원을 둔다.

- ① 센터(소)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(소)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②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취업기회의 발굴·확대 및 제공
2. 취업정보 및 진로지도관련 업무
3. 취업 대비 특화교육, 취업 및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개설
4. 각종 취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·제정 지원 및 조정업무
5. 기타 취업과 관련되는 업무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 취업 관련 전문가를 재적위원의 1/3 이상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센터(소)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센터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7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센터운영에 관한 장·단기 기본계획 수립
2. 규정(안) 및 운영세칙(안)의 심의 작성
3. 시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
4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4장 재 정

제8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와 외부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9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5장 취창업지원위원회

제10조(조직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취업지원센터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2. 위원은 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(센터)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3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취창업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두고, 이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